



## 보도참고자료

보도일시	2009. 2. 24(화) 배포시		
배포일시	2009. 2. 24(화)	담당부서	세제실 조세정책과
담당과장	안택순(2150-4210)	담당자	배정훈 사무관(2150-4111)

### 제목: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

- '09.2.24(화) "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(09.2.12일 당·정협의회 기 발표)"이 국회 재정위에서 별첨과 같이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의결되었음
  - 의결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활성화, 일자리나누기(Job-Sharing)·사회안전망 확대, 중산·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등임
-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·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

※ 별첨 :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결과(수정사항)

기획재정부 대변인

##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결과(수정사항)

### 1.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

당 초	수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택취득기간 - 2009.2.12~2009.12.31</li> <li>○ 감면율 - 지방 : 100% - 수도권과밀억제권역(서울제외) : 50%</li> <li>○ 감면대상 주택 - 20호 이상 신축주택 - (추 가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취득기간 연장 - 2009.2.12~2010.2.11(1년간)</li> <li>○ 감면율 상향조정 - 지방 : (좌 동) 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(서울제외) : 60%</li> <li>○ 감면대상 주택 확대 - 20호 미만 신축주택 추가 - 재개발·재건축을 제외한 개인 자가건설 주택 포함</li> </ul>

\* '09.2.12 당정협의 후 발표된 '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'

### 2.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보완

당 초	수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미분양주택펀드 세제지원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투자자 → 펀드 →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→ 미분양주택</li> <li>○ (추 가)</li> <li>○ (추 가)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요건 다양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좌 동)</li> <li>○ 투자자 → 펀드 → 미분양주택</li> <li>○ 투자자 →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 → 미분양주택</li> </ul>

※ 적용시기 : 법 시행일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

3. 퇴직소득세액공제(30%) 적용대상 보완

당 초	수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 적용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 <input type="checkbox"/> 2009.1.1~2009.12.31 퇴직자에 한하여 적용	<input type="checkbox"/> 중간정산자, 직원이 임원 승진한 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

※ 적용시기 : 2009.1.1이후 지급받는 퇴직소득분부터 적용

4.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수용되는 토지 양도세 감면확대

현 행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시 현지 주민에대한 양도세 감면 <input type="checkbox"/> 20년이상 보유토지 : 30% 감면 <input type="checkbox"/>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취득토지 : 50% 감면	<input type="checkbox"/>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1년*이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<input type="checkbox"/>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와 동일하게(30~50%) 감면 * 개발제한구역 해제전에 경제자유구역 등 공익사업 수용지구로 지정된 경우 : 5년

※ 적용시기 : 2009.1.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5. 주택담보노후연금(역모기지) 가입에 제공되는 주택의 담보등기시 등록세 감면액(50%)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

※ 적용시기 : 법 시행일이후 최초 담보등기분부터 적용